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성준 의원 외 20명

나. 의안번호 : 제2010호

다. 제출일자 : 2024. 8. 12.

라. 회부일자 : 2024. 8. 14.

2. 제안사유

-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등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임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부족인원이 크게 증가하여 차량을 제대로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승객 감소 및 버스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노동환경 개선, 직무능력향상 교육 등을 통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인력 유출

을 방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고충을 해소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 또한, 재정지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설개선 등 마을버스 지원과 관련된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성과관리 등을 강화해 대시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마을버스 시설 개선 사항에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
- 나. 재정지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설개선 등과 관련된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성과관리를 제고하고자 함(안제8조)
- 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휴게공간 마련 등을 위한 근무 및 노동 환경개선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1항제3호)
- 라.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안 제9조제1항제4호)
- 마. 조례 체계상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3조제4항, 안 제17조제5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20. ~ 2024. 8. 24.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계기관 의견¹⁾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제3조, 제5조, 제17조는 조례 체계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음
- 제8조는 마을버스 지원의 성과관리제고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음
- 제9조는 마을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음

1) 버스정책과-8147호('24.8.22.)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근무 및 노동 환경 개선과 안전운행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양성 지원에 대한 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 조례 체계상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현황

- '24년 3월 기준 서울시 마을버스는 140개 업체, 252개 노선, 1,564대 운행차량을 2,815명의 운수종사자가 운행하고 있으나 ‘'24년 마을버스 재정지원기준액 산정결과 보고’에 따르면 정상적인 마을버스 운영을 위한 적정 수준의 운수종사자가 차량 1대당 2.2명²⁾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약 626명이 부족한 실정임

2) '24년 마을버스 재정지원기준액 산정결과 보고(버스정책과-15812, '24.4.29.)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부족 현황

(市 내부자료, '24.3. 단위: 대, 명)

연 도	운행대수	現 운수종사자수(A)	적정 운수종사자수(B)	부족인원 (B-A)
2020	1,590	3,289	3,498	209
2021	1,590	2,981	3,498	517
2022	1,599	2,776	3,518	742
2023	1,599	2,797	3,518	721
2024	1,564	2,815	3,441	626

- 특히 코로나19 이후 '21년부터 운수종사자 부족인원이 크게 증가하여 차량을 제대로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배차시간이 늘어나는 등 이용 불편과 승객 감소³⁾에 영향을 주고 있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유인을 위한 처우개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안전 및 시설 개선 관련(안 제5조)

- 동 개정조례안 제5조는 시장이 사업자에게 마을버스 이용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제23조제1항⁴⁾에서 시

3) 대중교통 이용객 현황

(市 내부자료, 단위:천명/일)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대비
대중교통	10,445	7,767	7,776	8,563	11,656	+36.12%
지하철	5,222	3,791	3,842	4,288	7,229	+68.59%
시내버스	4,053	3,125	3,121	3,439	3,610	+4.97%
마을버스	1,170	851	813	836	817	△2.27%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5.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자동차 또는 운송 시설의 개선’ 및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설개선을 통해 마을버스 이용자의 사회적 편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시장이 사업자에게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시의회 보고 관련(안 제8조)

- 동 개정조례안 제8조는 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항목⁵⁾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사항(제9조)과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제9조의2)을 추가하는 것으로

마을버스 업계 지원 현황과 이에 대한 성과를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추가 포함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개선명령은 자치구 사무(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

5) 제3조(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제3조의2(외부회계감사), 제4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5조(안전 및 시설 개선), 제6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제7조(지원제외)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관련(안 제9조)

- 동 개정조례안 제9조제1항은 시장과 마을버스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휴게공간 마련 등 근무 및 노동 환경 개선과 안전운행을 위한 직무능력향상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법 시행규칙 제23조⁶⁾ 및 별표3은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으로 사업자가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등의 운송부대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별표4⁷⁾는 사업자 준수사항으로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법 제50조제2항⁸⁾에서 시·도는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별표3 : 가. 운송 부대시설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3호를 준용한다.

<별표2 : 3. 운송 부대시설>

구 분	시 설 기 준
라. 휴게실 및 대기실	운수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의 설비를 갖추는 것
마. 교육훈련시설	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는 것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1. 가. 21)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요한 시설 설치·개선,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이 필요한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과 사업자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9)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해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필요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설립,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장과 사업자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직무능력향상 교육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개정조례안이 실제 적용될 경우 현행 조례 제9조제2항10)에 따라 시장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6. <생략>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0)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운수종사자 직접 지원 여부, 운수회사를 통해 운수
종사자 지원시 누수 방지 대책 등 실행가능한 방안에 대해 다
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